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 - 231호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명령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명령(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3535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1. 처분당사자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2. 처분내용 : 다음의 장소 및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장소·시설·대상	처분대상	근거법령(처분근거)
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마스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하지 않은 자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나. 관리의무(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착용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관리자·운영자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 실내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o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 o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 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 o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 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2 ~ 4호
- 4. 처분사유 : 인천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 개인방역 강화 및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5. 처분기간 : 2023. 1. 30.(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가. 과태료 부과 금액
 -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83조제4항)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항)
 -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 기준
 - 나. 과태료 부과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개정 '20.8.12, 시행 '20.10.13)
 - 다.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 군수·구청장
 - 라.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단, ^①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②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방역지침 취지 상 과태료 부과 예외인 경우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경우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 항공기 조종사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3. 1. 30.(월) 0시부터
- 8. 처분서의 교부 신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처분 관련 부서

- 행정명령 관련 :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단속 및 과태료 처분 등 : 시, 군·구 담당 부서